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155
------------	--------

제출년월일 : 2019.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시 간 교류협력과 자매결연 등에 관하여 규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원활한 대외협력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적용대상을 ‘국외 도시’에서 ‘국내외 도시’로 확대
- 나. 대외교류와 관련한 정확한 용어 사용을 위해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 다.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9. 10. 14. ~ 11. 4. (제출된 의견 없음)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해당없음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5)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2019.11.7.)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내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외”를 “국내외”로, “도시간”을 “도시 간”으로, “우호협력”을 “우호 교류”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8조를 제10조로 하며, 제2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2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한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위한 협약체결 사전 단계로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교류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교류사업)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류활동
2. 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3. 경제·문화·예술·체육·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4. 교류도시 간의 공무원 상호파견
5.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물품의 지원
6. 상호 이해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중전의 제2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외도시”라 한다)”를 “구와 국내외 도시”로, “우호협력”을 “우호교류”로 한다.

제4조(중전의 제3조) 중 “국외도시”를 “국내외 도시”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도시의 자료를 송부”를 “국내외 도시의 자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적정성”을 “적정성 등”으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외도시”를 각각 “국내외 도시”로 한다.

제7조는 중전의 제6조와 같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1항 중 “**국외도시**”를 “**국내외 도시**”로, “**결연식**을”을 “**협약식**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외도시**”를 “**국내외 도시**”로 한다.

제10조제1항(중전의 제8조제1항)의 “**국외 자매도시**”를 “**국내외 자매결연 등의 도시**”로 한다.

제10조제2항(중전의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에 따른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설 이용, 교통수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등**”을 “**등의 도시와 협약**”으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0조) 중 “**국외 자매도시**”를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 시 마포구와 <u>국외</u> 지방자치단체 또는 <u>도시간</u>의 교류사업의 내실 화를 도모하고 자매결연 및 <u>우 호협력</u>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u><신 설></u>	<u>서울특별시 마포구 국내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 <u>국내외</u> ----- <u>도시 간</u>----- ----- <u>우호교류</u>-----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u>교류협력</u>”이란 <u>지리적 경 계를 초월한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 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 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 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 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u> 2. “<u>자매결연</u>”이란 <u>서울특별 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 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 시”라 한다)간 상호 긴밀한</u>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외도시"라 한다)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매결연 등 선정기준) 자매결연 등 대상 국외도시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위한 협약체결 사전 단계로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교류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구와 국내외 도시 -----
우호교류-----

 -----.

제4조(자매결연 등 선정기준) ---
 ----- 국내외 도시-----

 -----.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① --

 ----- 국내외 도시

국외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야 한다.

1. ~ 5. (생략)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② (생략)

제5조(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자
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
에는 상대 국외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구와 국외도시 상호간의 이
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각
종 자료 교환 및 방문을 통해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
한다.

제6조(의회동의)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및 파
기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
다.

제7조(자매결연 등 체결) ① 자매
결연 등은 구청장과 국외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
에 따라서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의 자료를 -----
-----.

1. ~ 5. (현행과 같음)

6. ----- 적정성 등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사전교류) ① -----

-- 국내외 도시-----
-----.

② --- 국내외 도시 -----

-----.

제7조(의회동의) (현행과 같음)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 ① ----
----- 국내외 도시--
----- 협약식을 -----

----- 협약식을
-----.

② (생 략)

③ 자매결연 등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외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교류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국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국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③ -----

----- 국내외 도시-----.

제10조(교류사업의 지원) ① ----
----- 국내외 자매결연 등의 도시-----.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에 따른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설 이용, 교통수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류사업)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류활동
2. 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3. 경제·문화·예술·체육·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4. 교류도시 간의 공무원 상호

	<u>파견</u> 5. <u>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 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물품의 지원</u> 6. <u>상호 이해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u> 7. <u>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u>제9조(사후관리)</u>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② (생략)	<u>제11조(사후관리)</u> ① ----- --- <u>등의 도시와 협약</u> ----- ----- ----- -----. ② (현행과 같음)
<u>제10조(자매결연 등 파기)</u> 구청장은 <u>국외 자매도시</u>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매결연 등을 파기할 수 있다.	<u>제12조(자매결연 등 파기)</u> ----- - <u>국내외 자매결연 도시</u>----- ----- -----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10조제2항
 - 교류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4. 작성자 : 행정관리국 총무과 임현경 (☎ 3153-8243)